

나. 반대토론

의원명	주요요지
김옥현 강문식	예술단의 연주에 있어 시민의식에 부족함이 있고 소비성향이 예술단 운영이 단원이 증원되는 문제는 예산에 부담되는 사항이며 타 문화 사업과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시민의 정서적 함양인식과 공감대 형성부족

5.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없음

나. 수정이유

없음

다. 수정주요골자

없음

6.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시민의 정서함양 차원에서 현실성 있게 시민자체
가 자진 관람하는 시립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 주길 바랍.

9. 체계자구심사내용

없음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1991. 5. 31

조례심사특별위원

1. 심사경과

가. 청원자 성명 : 장희연 외 445명

주소 : 부천시 중구 오정동 582-28

나. 소개의원 : 김일섭

다. 접수일자 : 1991년 5월 27일

라. 회부일자 : 1991년 5월 28일

마. 상정일자 :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
(1991년 5월 29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결
(1991년 5월 30일)

2. 청원요지

가. 오정동 소재 노동복지회관내에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탁아소 실시, 회관 사용 절차
간소화, 의견 수렴기구 설치.

3. 취지설명 요지

(취지설명 김일섭 의원)

가. 소개이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맞벌이 부부
를 위하여 노동복지 회관내에 탁아소를 설
치하여 자녀를 맡김으로 편안하게 근로 의
욕을 고취코자하고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용 근로자의 불편을 없애며, 또한 이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의견 수
렴기구를 설치하여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폭을 넓힐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청원임.

나. 주요 골자

노동복지회관내 탁아소 및 의견 수렴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요지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성모)

(주요요지)

이 청원의 사유와 현지어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할 때 부천시 17여만명의 근로자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하여는 시 차원에서 별도의 대단위 탁
아소 설치가 요망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본 청원의 소재지인 노동복지회관에 탁
아소를 설치한다면 건립취지 목적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탁아시설 보사부
지침으로 1층 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1층의 시설
검토한 바, 휴게실(61평)을 용도변경하여 일부를
탁아소로 사용하여야 되는데, 탁아소 설치 최소
시설 면적이 4평 이상(30명 수용)이어야 하므로
탁아소 면적을 제외한 휴게실 면적 21평으로는
부천시 17여만명의 근로자 휴게실로는 노동복지
회관 근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노동복지회관내
탁아소 설치에 부적합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질의요지	답변요지
○노동복지회관내 탁아소 설치가 가능한지?	○조례에 탁아소 설치 여부에 대한 법적 인 하자는 없지만, 노동복지회관 내 탁아소 설치에 회관건립 취지와 설치 조례에 따라 17여만의 근로자들의 여 가선용,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계획된 시설이므로 본 운영사업에 차 질을 초래함

- | | |
|---|--|
| ○ 만약 탁아소를 설치한다면 어느 시설을 용도변경하여야 되고 타당성은 있는지? | ○ 탁아시설은 관계규정상 1층에 한하므로 만약 설치한다면 휴게실(61평) 밖에 없으나, 탁아소시설 최소면적 40평(30명수용)을 할에해야 되는데, 부천시 인근로자 자녀 탁아소로는 협소할 뿐만 아니라, 21평의 휴게실로는 17여만의 근로 휴식공간으로 태부족임. |
| ○ 노동복지회관 사용 절차에 대하여 간소화 할 수 있는지? | ○ 조례상 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 전부 시장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비중을 가려 정부 공문서규정 제20조 1항에 의거 시장의 권한을 위임전결로 처리할 것임. |
| ○ 의견수렴기구 설치할 수 있는 있는지? | ○ 시에서는 직소 민원합의 설치와 기관장실에 직소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행 제도상 행정단위 기관의 운영효율을 위한 의견 수렴기구 설치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여타 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법규를 연구하여 검토하겠음. |

6. 토론요지

반대론으로는 노동복지회관내 시설규모상 30여명 밖의 자녀를 수용할 수 없는 탁아소 설치를 한다면 17여만의 전 근로자 맞벌이부부 자녀수를 전부 수용할 수도 없고 만약 수용한다 하더라도 유아교육상 2-3파트의 학급으로 분류되어야만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시킬뿐 아니라 또한 30여명을 위하여 예산, 인원충원을 갖추어야 되는 물론 노동복지회관내 휴게실이 21평밖에 안되므로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회관건립 취지에 어긋남.

찬성으로는 노동복지회관내에 다소 시설 여건과 운영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이라도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노동복지회관내에 탁아소 설치를 주장하고 있음.

7. 심사결과

결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없어서 표결을 붙이지 않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명의로 의견서만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기로 만장일치에 의결가결되었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 없음

9. 의 건 서

청원인의 청원에 의거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2일간의 회기중에 심사, 토론하여 의회에 심

사결과 보고토록 한바, 본 특위 전 위원은 2일간의 신중한 심사와 토론 그리고 현지답사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첫째, 노동복지회관내 탁아소 설치건에 대하여는 ...

- 전 위원은 부천시 근로자 맞벌이 부부자녀를 위한 탁아소 설치의 정당성, 현실성은 충분히 동감하고 필요사항이라고 납득되나, 본 시설의 구조를 현지답사하여 노동복지회관의 건립취지 목적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다소 제기되고 있음.

- 시설은 노동복지회관의 건립취지와 설치조례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여가선용,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된 시설로 건립되어 있으므로, 일부의 시설을 탁아소로 활용하면 본연의 운영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탁아시설은 관계규정상 1층 시설에 국한되어 있고 현 시설 여건상으로도 2, 3층은 탁아소로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1층의 시설 구조를 검토한 바, 만약, 탁아소를 설치한다면 휴게실(61평) 밖에 없으나 관계법에 의하면 탁아소설치 최소 시설면적인 40평이상 이어야 하므로 17여만명의 근로자들의 휴게실이 21평 밖에 안되어, 그 휴게실에는 원탁 3개에 12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휴게실에 원탁, 긴의자, 대형 TV, 대형부주관, 홍보전시장 등의 설치가 예정되고 있고 노동복지회관 건립취지인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에 불편을 주므로써 이용자의 불만을 초래할 것임.

또한, 1층 탁아소가 노동복지회관 출입문 앞에 있으면 노동복지회관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각종 운영사업과 결혼식 등으로 인한 많은 근로자 및 일반인들의 휴식공간 부족으로 불만요인이 가중되어 근로자들의 여가선용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가 없을 것임. 탁아시설은 사전에 관계부처의 협의 승인후 국, 도비 예산으로 보조제원 운영되고, 시비에서 일부 비원하여야 되며 전액 시비에서 지원운영할 경우 국·도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음.

둘째, 회관 사용을 쉽게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

-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의 전당으로 회관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불편이 없도록 시에서는 정부공문서 규정 제 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일부 위임 전결로 처리할 것임.

셋째, 노동복지회관 운영 효율을 위한 의견 수렴 기구 설치에 대하여 ...

-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기구가 없어도 의회의 고유권한인 시정에 대한 조사·검사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만약 시에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위반되거나, 부조리 등이 발생될 때에는 의회 차원에서도 감사가 가능하므로 의견수렴기구 설치는 회관운영 실태를 계속 관망한 후 꼭 의견수렴기구의 설치가 필요할 때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부천도시계획시설(하수도 : 종말처리장)
결정안심사보고서

1991. 5. 31
지역개발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1. 5. 25
나. 제안자 : 부천시청
다. 회부일자 : 1991년 5월 28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1991. 5. 29)상정
제2차 지역개발특별위원회(1991. 5. 30)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가. 제안이유

- 도시생활오수및 공장폐수로 인하여 한강수계인 굴포천이 하수천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도시기능의 파양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경인운하 건설에 대비하고,
- 특히,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하여 중동신시가지 조성으로 인구증가가 예

상되므로 도시계획으로 하수처리장을 결정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최종방류수역인 한강수질을 개선코자 함.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평)	
시설	하 수 도 (종말처리장)	중구 대장동 538의 207필지	372, 126.35 (112, 568.2)	국유지 26,242.75 (7,938.4)포함

3. 질의 및 답변 요지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종말처리장이 인천과 부천 두시가 사용할 텐데 큰시인 인천에 유치될 검토해 보았는지(또, 우리시가 비용을 더 부담하는 조건일지라도)	○중동신도시 하수시설이 오·우수가 분류되는 분류식이어서 정화조가 없는 연유로 하수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이고(인천에서는 현재로서 별로필요가 없으며) 건설부의 부천물량이 크니 인천과 같이 부자 부천에 유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우리시가 면적이 애초한 실정에 과연 112,000천평씩이나 필요한지 축소조정가능한지?	○도시계획을 20년후를 대비하여 인구 130만명의 수용을 감안하여 설계할 수 밖에 없음.
○토지소유주와 마찰은 없는지?	○등기로 소유자에 연락 2개신문 공람 공고 하였음.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천도시계획시설(지역, 시설)
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1991. 5. 31
지역개발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1. 5. 25